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명칭을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며, 여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7.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제3조의2제6항제5호 중 “**학습조직의 운영·관리**”를 “**국정과제 관리·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여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총괄

제6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을 각각 “**경력단절여성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제14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관리
- 5.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8.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
- 9.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 및 평가
- 10. 아이돌보미 자격·교육 및 노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및 아동청소년보호과”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및 평가에 관한 사항”를 “총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립”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지원과장”을 “성폭력방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육성”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 11.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 12.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책 총괄 및 이행 점검”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센터 운영·관리”를 “기관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11. 디지털 성범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2.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보호과장”을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정폭력”을 각각 “가정폭력·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4호 중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법률·주거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

며, 같은 항 제9호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스토킹**”으로, “**확산**”을 “**확산 및 대국민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을 “**북한이탈여성**”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기반과장**”을 “**폭력예방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육성**”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양성·관리**”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관리**”를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5호 중 “**우편고지명령**”을 “**고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을 “**가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등**”을 “**등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한시정원**”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75**”를 “**2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를 “**41**”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3**”을 “**2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81**”을 “**279**”로 하고, 일반직 계 “**277**”을 “**27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4**”를 “**4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3 중 “**권익침해방지**”를 “**디지털성범죄방지**”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2)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5. ~ 13. (생략)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6.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⑦ ~ ⑨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 13. (현행과 같음) ⑥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국정과제 관리·점검 6. ~ 13. (현행과 같음) 14.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여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총괄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정책국) ① ~ ④ (생략)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여성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생략) 11. <u>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u> 12. <u>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u> 13. ~ 16. (생략) ⑥ <u>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u> 2. <u>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u> 3. <u>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u> 4. (생략) 5. <u>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u> 6. <u>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7. <u>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u> 8. <u>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u>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13. ~ 16. (현행과 같음) ⑥ ----- -----. 1. <u>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u> ----- ----- 2. <u>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u> ----- ----- ----- 3. <u>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u> ----- 4. (현행과 같음) 5. <u>경력단절여성등</u> ----- ----- 6. <u>경력단절여성등</u> ----- ----- 7. <u>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u> ----- ----- 8. <u>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u> -----
---	---

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u>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u> 의 지정·운영	9. <u>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u>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⑬ (생략)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가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행</u>	3. <u>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관리</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u>	5. <u>가족친화인증위원회 구성·운영</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u>	7. ----- <u>관련 법령의 관리·운영</u>
<신설>	8. <u>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u>
<신설>	9.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 및 평가</u>
<신설>	10. <u>아이돌보미 자격·교육 및 노무에 관한 사항</u>
⑮ (생략)	⑮ (현행과 같음)
제8조(권익증진국) ① (생략)	제8조(권익증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② -----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및 아동청소년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u>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가정폭력스트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u>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
3. ~ 8. (생략)	-- <u>총괄</u>
9. <u>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u>	3. ~ 8. (현행과 같음)
10. <u>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및 실적 평가·분석</u>	9. ----- <u>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삭제></u>
11. ~ 19. (생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성폭력방지과장</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u>	2. <u>성희롱·성폭력</u> -----
3.·3의2. (생략)	--
4. <u>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u>	3.·3의2. (현행과 같음)
	4. -----

상답소의 지원·육성 5. (생 략) 6. <u>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7. <u>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u> 8. (생 략) 9. · 10. <u>삭 제</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⑤ <u>권익침해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총괄 및 이행 점검</u> 2. <u>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관리</u> 등에 관한 사	-----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u>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u> 8. (현행과 같음) 11. <u>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u> 12. <u>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⑤ <u>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u>----- 1. -----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 기관 운영 및 관리 -----	항 3. · 4. (생 략) 5. <u>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및 이행 점검</u> 6. <u>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7. <u>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8. <u>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⑥ <u>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u> 2. <u>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u>	-- 3.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9. <u>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u> 10. <u>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u> 11. <u>디지털 성범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u> 12. <u>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에 관한 사항</u> ⑥ <u>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u>----- 1. <u>가정폭력·스토킹</u> ----- 2. <u>가정폭력·스토킹</u> -----
--	--	--	--

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	지원·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3. <u>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u>	3. <u>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4. <u>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4. <u>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의료·법률·주거 지원</u> -----	6. <u>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u>	6. ----- 등에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6. <u>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u>	<삭제>	12. 삭제	13.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13. <u>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u>	----- 운영-----
9. <u>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u>	9. <u>가정폭력·스토킹</u> ---- <u>확산</u> 및 <u>대국민 홍보</u> -----	14.·15. (생략)	14.·15. (현행과 같음)
10. <u>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u>	<삭제>	16. 삭제	<삭제>
11. <u>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u>	11. ----- <u>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u> -----	17. <u>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18. -----
12. <u>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	12. <u>북한이탈여성</u> -----	18. <u>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u>	<u>관련 교육기관의 지원</u> -----
⑦ <u>권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폭력예방교육과장</u> -----	<신설>	19. <u>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u>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⑧ -----
4. <u>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u>	4.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u>	5. ----- <u>고지명령</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삭제>
8.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 가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
9.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삭제>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등 성교육에 관한 사항	10. ----- -- 등 아동·청소년 대상 ----- --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4장 한시정원	<삭제>
제12조(한시정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성가족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12조(한시정원) <삭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279	277	-2
·	·	·	
·	·	·	
일반직 계	275	273	-2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	41	-1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3	22	-1
·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81</u>	<u>279</u>	-2
·	·	·	
·	·	·	
일반직 계	<u>277</u>	<u>275</u>	-2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 무관·전산사무관·시 설사무관·공업사무관 ·통계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u>44</u>	<u>43</u>	-1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전산주사·시설주사 ·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21</u>	<u>20</u>	-1
·	·	·	